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

의안 번호	221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12. 6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「산업안전보건법」이 개정되어 ‘지방자치단체의 책무’ 및 ‘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’규정이 신설됨에 따라, 달성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규정(안 제6조)
- 나.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규정(안 제7조)
- 다.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규정(안 제8조)
- 라.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규정(안 제9조)
- 마.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규정(안 제10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2, 제4조의3 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사항
 - (1) 입법예고(2022. 9. 27. ~ 10. 17.) 결과 : 의견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(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5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6) 비용추계서 : 따로 붙임(※ 미첨부 사유서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근로자”란 「산업안전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사업주”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3. “노무를 제공하는 자”란 「근로기준법」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법 제78조에 따른 배달종사자 등의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군수의 책무)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군 지역 내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, 대구지방고용노동청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, 사업주단체,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(이하 “관련기관”이라 한다)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6조(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)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(이하 “예방대책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
2.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·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
3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·업종별 대책

4. 사업주 및 근로자,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
5.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
6.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·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
7.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
8.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)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
2.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,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·연구
3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달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
4.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
5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,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교육
6.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
7. 재해근로자·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
8.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달성군 안전보건지킴이)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달성군 안전보건지킴이(이하 “안전보건지킴이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
2.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
3.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
4.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

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.

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,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
 2. 기업체,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·기관 등에서 안전보건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
 3.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
-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)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. 이 경우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2.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)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산업안전보건법

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「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」 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추진계획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‘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’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고용노동부가 권고한 표준안에 근거한 달성군 조례 제정 이후 각종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따른 재정적 요인이 발생할 것이지만,
- 고용노동부와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매칭 지원 등 사업의 추진방향과 규모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, 또한 각 분야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요비용을 예측하여 추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용추계서 첨부을 생략함

